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697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25년 5월 26일
4.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II.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제안이유

-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한 일상 등을 위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함.

2.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9조 7,691억 1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8조 1,544억 6천 4백만원에
대비하여 3.4%(1조 6,146억 5천 4백만원) 증가함.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조 5,969억 3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1조 1,676억 2천 1백만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4조 1,721억 8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4,470억 3천 3백만원) 증가함.

<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49,769,118	48,154,464	1,614,654	3.4
일 반 회 계	35,596,934	34,429,313	1,167,621	3.4
특 별 회 계	14,172,185	13,725,152	447,033	3.3

3.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가. 세입

- 기획조정실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며, 2025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55억 2천 9백만원에서 16억 3천만원(1.5%) 증가한 1,071억 5천 9백만원임.

<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특별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일 반 회 계	107,159	105,529	1,630	1.5

나. 세출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283억 3천만원에서 3,689억 7천 1백만원(39.7%) 증가한 1조 2,973억 1백만원임.

<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1,297,301	928,330	368,971	39.7
행정운영경비	1,172	1,172	-	-
재무활동	737,001	378,506	358,495	94.7
사업비	430,455	429,990	465	0.1
예비비	128,673	118,662	10,011	8.4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958억 3천 1백만원(52.4%) 증가한 8,600억 4천 4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31억 3천 9백만원 (20.1%) 증가한 4,372억 5천 7백만원이 각각 편성됨.

< 기획조정실 소관 회계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1,297,301	928,330	368,971	39.7
일반회계	860,044	564,213	295,831	52.4
도시개발특별회계	437,257	364,118	73,139	20.1

- 주요 추경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서울시립대학교의 등록금 인상에 따라 참여가 어려워진 국가장학II를 대체하기 위한 장학제도를 신설하고자 4억 3천 5백만원을 증액함.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시행(2025.1.1.)으로 세제과의 시 선정 대리인 업무가 법무담당관으로 이관(2025.2.12.)됨에 따라 관련 예산 1천만원을 증액함.
- 2025년 7월 1일자로 신설되는 규제총괄관의 보수 지급을 위해 2천만원을 증액함.

III.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규모

- 당초 2025년 세계 경제는 양호한 고용 상황과 제조업 중심의 회복 조짐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미국 정부의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와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소비와 투자가 크게 둔화되면서 2025년 상반기 들어 IMF¹⁾와 OECD²⁾ 등은 2025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함.
- 또한 국내·외 경제기관들은 민간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부진과 관세 전쟁 등에 따른 수출부진,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인한 정치 불안정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대폭 하향하였으며, 일부 기관은 0% 대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음.

〈 주요 기관의 국내 성장률 전망 현황 〉

(단위 : %, %p.)

구 분	기존 전망치	시점	수정 전망치	시점	변동폭
		'24.7		'25.1	
정부	2.6	'24.7	1.8	'25.1	△0.8
한국은행	2.2	'24.11	0.8	'25.5	△1.4
KDI	1.7	'24.12	0.7	'25.5	△1.0
IMF	2.2	'24.11	1.0	'25.4	△1.2
OECD	2.3	'24.12	1.0	'25.6	△1.3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1) 2025년 1월 예측 : 3.3% → 2025년 4월 예측 : 2.8%

2) 2024년 12월 예측 : 3.3% → 2025년 3월 예측 : 3.1%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 발생, 글로벌 첨단 기술 주도권 경쟁 격화,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서민·소상공인의 어려움 가중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 급속히 약화되자 지난 4월 21일 재해·재난 대응(3.2조원), 통상 및 AI 지원(4.4조원), 민생경제 지원(4.3조원)을 내용으로 기정예산(673조 3천억원) 대비 12조 2천억원이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는 10일 만인 5월 1일에 추가로 1조 6천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3조 8천억원이 증액된 687조 1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함.
- 이에 따라 서울수도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수출 부진을 극복하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싱크홀)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기정예산 대비 1조 6,146억원이 증액(3.4%)된 49조 7,69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민생안정, ▶도시안전, ▶미래투자의 3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임.

< 2025년도 서울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점투자 분야 >

(단위 : 억원)

민 생 안 정	▶ 소상공인 지원	287억원	4,698
	▶ 중소기업 수출지원	242억원	
	▶ 취약계층 지원	2,986억원	
	▶ 저출생 대책 강화	1,183억원	
도 시 안 전	▶ 지반침하 대책	1,462억원	1,587
	▶ 안전인프라 보수·보강	125억원	
미 래 투 자	▶ AI 산업 기반 조성	354억원	1,335
	▶ 글로벌 매력 제고	981억원	

2.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가. 세 입

- 2025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3천만원이(1.5%) 증액된 1,071억 5천 9백만원이 편성됨.

<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변경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경 사유
일반회계	107,159	105,529	1,630	
소방안전교부세	36,639	35,010	1,630	2025년도 소방안전교부세 확정내시 차액 반영 (인건비+일반수요 사업비)

- 증액사유는 소방안전교부세의 가내시액보다 확정내시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이는 정부 의존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가 국회의 예산안 의결을 거쳐 매년 1월에야 시·도별 교부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매년 세입 경정이 불가피한 구조로 운용되는 점에 기인함.

나. 세 출

-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1조 2,973억 1백만원으로, 3개 사업에서 4억 6천 5백만원, 예비비에서 100억 1천 1백만원, 재무활동에서 3,584억 9천 5백만원이 각각 기정예산 대비 증액되어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정예산 1.9%보다 0.7%포인트 상승한 2.6%임.
- 증액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에서 4억 3천 5백만원,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1천만원,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에서 2천만원이 각각 증액됨.

- 그리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100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에서 1천 1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로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적립으로 2,853억 6천 7백만원, 2025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여유자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으로 731억 2천 8백만원이 각각 증액됨.

<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안 세출 편성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추경내역
기획조정실 합계		1,297,301	928,330	368,971	
일반회계		860,044	564,213	295,831	
조직담당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64,210	63,776	435	- 등록금 인상에 따른 국가장학 II 유형 참여 불가 손실액 434,553천원 지원
법무담당관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269	259	10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2025.1.1.)에 따라 세제과의 시 선정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는 법무담당관으로 이관(25.2.12.)됨에 따라 예산 증액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98	78	20	- 규제총괄관 신설(2025.7.1.)에 따른 보수 지급을 위한 예산 증액
예산담당관	예비비 (일반회계)	123,944	113,944	10,000	-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추경 세입세출 규모조정을 위해 증액
재정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순세계잉여금)	285,367	0	285,367	-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적립
도시개발특별회계		437,257	364,118	73,139	
예산담당관	예비비 (도시개발특별회계)	4,729	4,718	11	-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추경 세입세출 규모조정을 위해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432,528	359,400	73,128	- 도시개발특별회계 여유자금의 신속적 활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예탁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³⁾, ▶ 목적적합성, ▶ 예측불가능성, ▶ 보충성, ▶ 시급성, ▶ 연내집행가능성, ▶ 한시성 등을 요건으로 함.

<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 >

요건	세부내용
목적적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연내집행가능성	해당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한시성	추경안에 편성되는 재정사업이 한시적 재정사업일 것

- 이번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와 서울시립대의 회계연도 불일치로 인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예산 증액과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 증액을 내용으로 하여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등의 추경안 편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한편 기획조정실이 서울시 전 실·국의 지출을 모두 관리하고 있는 예비비는 전반기에 소송 판결금 지급 등으로 인해 일반회계 예비비의 53.5%(609억 6천 만원)⁴⁾가 지출됨에 따라 하반기에 있을 추가적인 예비비 지출에 대비하여 100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사료됨.

3)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후단 생략)

4) 양재 하림부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결금(404억 9천만원),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패소에 따른 기고지 변상금 납부(155억 3천 6백만원), 유상 맥각 토지 매매대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39억 7천 2백만원), 문화비축기지 내 취약 기반시설 보강(7억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운영(2억 5천 6백만원), 북 쓰레기풍선에 따른 시민피해 보상 지원(5백만원)

3. 주요 사업 검토

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사업별설명서 195쪽)

- 동 사업은 서울시립대학교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4억 3천 5백만원이 증가한 642억 1천만원이 편성됨.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합계	64,210	63,776	435
사무관리비	3	3	-
공립대학운영비	64,207	63,773	435

- 서울시립대학교(이하 “시립대”)의 세입예산은 국가지원금, 자체 수입금, 시 지원금으로 구성되며, 이 중 국가지원금은 국가장학금과 특정 국비 사업의 재원으로, 자체 수입금과 시 지원금은 시립대의 운영 재원으로 활용됨.

< 서울시립대 2025년 대학회계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본예산 (A)	2024년 최종예산 (B)	2025년 본예산 (C)	증감	
				증감 (D=C-A)	증감률 (E=D/A)
합계	107,745	139,705	110,883	3,138	2.9
국가 지원금	-	23,690	-	-	-
시 지원금	62,123	65,980	63,773	1,650	2.7
자체 수입금	45,622	50,035	47,110	1,488	3.3

-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시립대의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국가 장학II 유형⁵⁾에 참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장학제도를 신설하고자 4억 3천 5백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5) 국가장학II 유형은 해당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대학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대학연계형 국가장학금으로 대학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소속 학생은 II유형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

-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국가장학II 유형 참여불가에 따른 손실액 14억 5천 7백 만원에서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증가하는 수입증가액 10억 2천 2백만원을 차감한 것임.
- 3월부터 시작되는 시립대 회계연도⁶⁾의 특성과 2025년도 서울시 본예산 심의시에는 시립대의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경예산안에 동 예산을 반영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시립대 지원금은 서울시와 시립대 간 회계연도 불일치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매년 추가경정예산을 전제로 서울시 본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록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사업설명서 199쪽)

- 동 사업은 서울시 법무행정 정보 제공,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의 발굴·개선 건의,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주민e직접 플랫폼 운영 및 주민조례·투표 청구 등 주민직접참여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1천만원(3.9%)이 증액된 2억 6천 9백만원이 편성됨.

<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합 계	269	259	10
사 무 관 리 비	157	147	10
공 공 운 영 비	19	19	-
공민등에대한명상적유류사업비	93	93	-

6) 시립대의 회계연도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됨.

-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2025년 1월 1일자로 지방세 선정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추가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예산 1천만원을 증액한 것임.
-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한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이나 이의신청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세무대리인(선정대리인)이 무료로 불복업무를 대리하는 제도로, 납세자는 선정대리인으로부터 법령 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의 불복 청구 관련 업무를 지원받게 됨.

< 지방세 선정대리인 지원 대상 >

구 분	지원조건
개인	-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
법인	- 매출액 : 3억원 이하 - 자산가액 : 5억원 이하
청구신청세액	2천만원 이하
고액·상습채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 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채납자는 신청 불가

- 서울시는 그동안 지방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이의신청 담당부서인 재무국(세제과)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에서 서울시 지방세 선정대리인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법령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의 담당부서인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임.
- 다만 사업 이관 시에는 예산 이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이번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서 간 관련 예산 1천만원을 상계 처리하고 있는바, 이는 예산 이체 제도가 조직 변경에 따른 사무 이관을 전제로 하는 반면, 지방세 선정대리인 사무는 조직 변경 없이 사무만 이관되었기 때문으로, 이에 따른 법리적 문제는 없음.

다.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사업설명서 204쪽)

- 동 사업은 징계처분이나 불리한 처분, 부작위로 침해된 공무원의 권익을 구제하고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와 각종 규제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하고자 설치된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2천만원(25.6%)이 증액된 9천 8백만원이 편성됨.

<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합 계	98	78	20
사 무 관 리 비	88	68	20
시 책 추 진 업 무 추 진 비	10	10	-

- 서울시는 미국의 제2기 트럼프 정부 출범, 12.3 비상계엄 등의 국내외적 경기침체 요인으로 인해 수출과 국내소비에 어려움이 예견되자 민생경제 회복 방안으로 ‘규제개혁’을 제시하였음.
- 그리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규제철폐 100일’을 운영하여 130건의 규제철폐안을 발굴·발표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전담조직 설치, 규제개혁 총괄 민간전문가 설치 등을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을 개정하였음.
- 이에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규제개혁 총괄 민간전문가인 ‘규제총괄관’의 보수지급을 위한 예산 2천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과정에서 제시된 비용 추계 내용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음.

- 다만 동 조례안 심의 당시 지적된 규제총괄관과 규제혁신기획관 및 규제 개혁위원회 간의 권한 및 기능의 중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규제총괄관 운영 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최범준	02-2180-8056